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97 |
|----------|----|

제출일자 : 2008. 4. 7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계약시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출연금을 문화체육 활성화와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향상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
- 기금의 운용수익금
- 기타 수입금

나.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·관리를 위한 사업
- 문화예술관련 공연, 전시, 강좌 등 개최 및 지원
-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
-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기금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운용심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
- 심의사항 :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

라. 기금의 존속기한(안 부칙 제2조) : 공포한 날부터 5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
같은 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구 금고 제안서의 협력사업비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8. 3. 12 ~ 4. 1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·관리를 위한 사업
2. 문화예술관련 공연, 전시, 강좌 등 개최 및 지원
3.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
4.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**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.

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.

**제5조(기금운용의 심의)**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
4. 기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)**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수입·세출예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회계공무원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총무과장
2. 기금출납원 :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업무 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.

**제8조(기금의 결산)**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
2.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.